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32
----------	-------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구자근 · 김선교 · 인요한
김위상 · 강대식 · 정동만
최수진 · 박덕흠 · 배준영
서일준 · 강명구 · 신동욱
박준태 · 이만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전자송달 등 고지서 송달이 요구됨.

그러나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사용이 대중화되어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진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어 납세자의 오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납부고지서 송달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8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고지서 송달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진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8조의2(납부고지서 송달의 예외)</u> 제8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 ⑦ (생략)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u>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u>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u><단서 삭제></u>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	----------------